

2020년 1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(044-201-1891), 서기관 최승묵(1840) / 제공일: 1월 2일(총 2매)

적력 없이 농사 짓고 산성 지고 조비하는 나라

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업을 할 수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

[1월 1일 한국경제 인터넷판< “美 무인점포 ‘아마존 고’,
中드론으로 농약살포…한국선 불법” > 보도에 대한 해명]

- 농약방제, 시비,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은 ‘농업기계’로 규정되어 있으며,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활용되고 있음
- 1월 1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<“美 무인점포 ‘아마존 고’, 中드론으로 농약살포…한국선 불법”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.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.
- “드론활용 농약살포 관련” 규제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근거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한국에서 드론이 농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없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
- 정부는 농약방제, 시비, 파종 등 농업에 활용되는 드론을 ‘농업 기계’로 규정하고 있으며, 드론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농기계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
 - 농약살포용 드론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(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)에서 “38. 농업용 무인 항공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며,
 -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지원(연 2.0% 융자) 대상 농기계에도 포함되고 있음
-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 및 업계의 관심이 큰 바, 정확한 사실 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 됨